

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30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여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,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내수면어업 육성·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(안 제4조)

다. 내수면어업 사업지원 및 지원대상(안 제5조 ~ 안 제6조)

라.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7조 ~ 안 제9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제안배경 및 필요성

○ 이 조례안의 상위법인 「내수면어업법」(이하 “법”)은 내수면 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·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

- 법은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충북도의 경우 내수면어업에 관해 미흡한 부분이 식별됨¹²⁾에 따라 정책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보완하고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켜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제정안은 본칙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, 내수면어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
- 안 제4조는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)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정책 실행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음¹³⁾
-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지원 범위 등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내수면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수산물 가공·유통,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

12)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국기 의원은 2023년 7월 14일 농정국의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충북도가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, 이에 농정국장은 수산업 계획 수립으로 대체하고 있으나, 이 계획은 내수면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함

13)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-2899(2022. 5. 30.) ‘2022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제출 협조 요청’에 따라 농정국은 지난 2022년 6월 ‘축수산과-6851(2022. 6. 2.) ‘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제출’ 공문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음

- 이 제출공문에 따르면, 시행계획 현황에 시행계획 수립 여부항목에는 시행계획인 아닌 기본계획 연구용역임에도 ‘기 수립’이라고 기재, 수립시기에는 매년 수립해야 함에도 ‘5년 주기로 수립’한다고 밝히며, 2019년 12월에 작성된 ‘2020~2024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’을 붙임문서로 제출하여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
- 이에 조례안에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

-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내수면어업 발전협회의 설치·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 등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함
- 안 제10조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내수면어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식별된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,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
- (타당성)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지원 내용과 심의 자문을 위한 협의회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
- (법적합성)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만,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충북도의 내수면어업 관련 정책을 되돌아 보고, 강점은 보강하고,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